

청주지방법원 2020. 3. 5 선고 2019가단710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3. 5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

가.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

나. 피고 C, D은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

각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9. 4. 13. 접수 제58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청구취지 기재 "청주지방법원 등기과"는 "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"의 오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행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현수

별지